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

심의 • 의결

**안건번호** 제2023-012-123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

대표자

의결연월일 2023. 7. 12.

주 문

- 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.
  - 가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
  - 나.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
- 2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1,0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# 이 유

## I. 피심인의 일반 현황

피심인은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법률 제16930호,이하 "보호법"이라 함)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일반현황 >

사업자등록번호	법 인 등 록 번 호
대표자 성명	설 립 일
상시 종업원 수	3년 평균 매출액
사업장 주소	

## Ⅱ. 사실조사 결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( )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 1. 행위 사실

## 가. 개인정보처리 위·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은 ㈜ 에 채용 단계의 일부인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㈜ 와 '운영 계약'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계약서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필수 법정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\*\*한 사실이 있다.

\*\*  $\triangle^{(M3^{\circ})}$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,  $\triangle^{(M4^{\circ})}$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누락 \*\*\*

#### 나. 수탁사 관리·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은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(수탁사)를 관리·감독할 책임이 있으나, 이를 소홀히 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.

#### 2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# Ⅲ. 위법성 판단

#### 1. 개인정보처리 위·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

#### 가. 관련 법령의 규정

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위·수탁에 대해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#### ※ 위·수탁 문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

-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
-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-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
-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
-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
- ⑥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
- ⑦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

#### 나, 위법성 판단

(주)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**보호법** 제26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.

#### 2. 수탁사 관리·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

#### 가. 관련 법령의 규정

보호법 제26조제4항은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,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

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은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### 나. 위법성 판단

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·감독할 책임이 있으나, 이를 소홀히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보호법 제26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.

## Ⅳ. 처분 및 결정

## 1. 시정조치 명령

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.

- 가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제4항을 준수하여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것
- 나.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

# 2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4호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[별표2]「과태료의 부과기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**총 100만**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# 가. 기준금액

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 원을 적용한다.

< 과태료 부과기준 2. 개별기준 >

		과태료_금액(단위 : 만 원)			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	
너.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4항제4호	200	400	800	

#### 나. 과태료의 가중

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[별표2] 과태료 부과기준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.

#### < 과태료의 부과기준 >

#### 1. 일반기준
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  - 1)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
 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# 다. 과태료의 감경

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, 시정조치(안)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위반행위를 중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50%를 감경한다.

#### < 과태료의 부과기준 >
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  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
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라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·감경을 적용하여 총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# <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>

과태료 처분의 근거			과태료 금액 (단위:만 원)			
위반 조항	처분 조항	기준 금액(A)	가중액 (B)	감경액 (C)	최종액 (D=A+B-C)	
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제1항	제 75조 제4항 제4호	200	-	100	100	

<sup>※</sup>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, 100분의 20을 감경함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)

# 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제1항·제4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(시정조치 등)제1항 및 제75조(과태료)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행정심판법」제27조 및「행정소송법」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# 2023년 7월 12일

- 위원장 고학수 (서명)
- 부위원장 최 장 혁 (서 명)
- 위 원 강정화 (서명)
- 위 원 고성학 (서명)
- 위 원 백대용 (서명)
- 위 원 서종식 (서명)
- 위 원 염흥열 (서명)
- 위 원 이희정 (서명)
- 위 원 지성우 (서명)